

1. 개정이유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이용기관)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주체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민간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기관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민간 서비스 이용 편의성과 본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기관 범위 확대(안 제2조제3호 내지 제7호 신설)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 민간 수요를 반영하여 항공·무역·에너지 분야를 포함하여 이용기관의 범위 확대

나. 본인정보제공 심의위원회의 업무 연속성 확보(안 제3조제5항 신설)

- 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위원 교체 과정에서의 위원회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임위원 임기만료 후 후임위원 위촉 전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전임 위원이 직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항공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4. 「세무사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
5. 「관세사법」 제17조의2에 따라 등록한 관세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등록한 통관취급법인등
6. 「관세법」 제116조제1항제5호라목에 따른 급부·지원 등의 업무와 관련된 자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및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제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심의위원회 위원은 제4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 정보의 제공 등)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2항제3호에서 “행 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2조(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 정보의 제공 등)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항공사업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국 제항공운송사업자
<u><신 설></u>	4. 「세무사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
<u><신 설></u>	5. 「관세사법」 제17조의2에 따라 등록한 관세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등록 한 통관취급법인등
<u><신 설></u>	6. 「관세법」 제116조제1항제5 호라목에 따른 급부·지원 등 의 업무와 관련된 자
<u><신 설></u>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 2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및 같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에너지진단전문

